

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(제5조 관련)

1. 제분업 및 제조업

구 분		시설기준
제분업	밀가루	가. 고르는 장치: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. 분쇄장치: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.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다. 체장치: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.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라. 시험장치: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·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
	쌀가루	가. 분쇄장치 나. 체장치
	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	가. 고르는 장치: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. 분쇄장치 다. 체장치
제조업	옥수수전분 및 옥수수전분당(물엿·포도당·과당) 제조업,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업	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따른 시설

2. 도정업

구 분	시설기준
미곡도정	미곡을 1일(8시간 기준)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
맥류도정	맥류를 1일(8시간 기준)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

비고

- 가.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.
- 나. “미곡도정”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,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다. “맥류도정”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·밀쌀·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라.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